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18
----------	-----

2025. 4. 30.(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영호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영호 의원)

가. 제안이유

-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며,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법제명 및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 개정의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 지원법’ 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 중 일부 혼란 방지를 위해 2015. 5. 15. 충청북도조례 제3783호로 제정·시행된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현행 조례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의 자치법규 입법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입 법 평 가 >

< 입 법 평 가 >

총 합 의 견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나 일부 혼란방지를 위해 본칙 수정 권고 ○ 타 시도 유사 조례와의 비교한 결과 큰 차이는 없으나 일부 사례 참고 필요 - 위임조레이나 자치법규 조문 해석·집행하는 데 있어 지침을 제시하는 조문에 대한 참고 필요(전북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장” 으로 내용을 구분한바 조례 이해도 확보를 위한 조문 추가 등 정비 필요 -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규정(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 검토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평가결과</td> <td style="width: 15%;">☐ 현행유지</td> <td style="width: 15%;">☒ 일반정비</td> <td style="width: 15%;">☐ 개정권고</td> <td style="width: 15%;">☐ 통합권고</td> <td style="width: 15%;">☐ 폐지권고</td> <td style="width: 15%;">☐ 기타</td> </tr> </table>	평가결과	☐ 현행유지	☒ 일반정비	☐ 개정권고	☐ 통합권고	☐ 폐지권고
평가결과	☐ 현행유지	☒ 일반정비	☐ 개정권고	☐ 통합권고	☐ 폐지권고	☐ 기타	

○ 본 개정조례안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장’ 으로 구분함.

- 제1장 총칙, 제2장 공청회, 제3장 인 · 허가 의제 협의회, 제4장 지역개발 조정위원회, 제5장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6장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및 특별회계로 각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하였음.

○ 안 제2조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함.

○ 안 제10조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 순서를 참고¹¹⁾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역개발지원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11) 위원회: 설치→기능→구성→임기→직무→운영(회의)→수당
(2023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 148면)

○ 안 제18조 단서를 삭제함.

- 위원회 위원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관련 조례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따로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음.¹²⁾
- 기존 조례 제17조 단서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내용으로 이를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안 제19조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령에 지역개발지원법 제44조제1항을 추가함.

○ 안 제21조에 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내용을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제57조로 수정함.

○ 안 제22조에 지역개발지원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 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신설함.

○ 기타 조문 이해도의 향상을 고려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문장 구조, 용어 등을 정비함.

○ 조례안 예고(‘25. 4. 15.~‘25. 4. 2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

4. 검토의견

○ 이번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명확한 집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2)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34면

- 특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도민의 이해도 제고, 실질적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효과가 기대됨.
- 그밖에 절차적인 면에서 집행부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 결과 달리 제출된 의견이 없는 등 조례 제정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의안번호	제918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황영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8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황영호,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1. 제안이유

명확한 조례 해석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며,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입법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다.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 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법제명 및 어문 규정에 따른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며, 제20조를 제23조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1항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를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진행하게”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공청회

제4조(중전의 제3조)제2항 중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자문의견”으로 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인·허가 의제 협의회

제7조(중전의 제6조) 중 “협의회를 개최하기” 를 “협의회 개최” 로 한다.

제4장(제1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10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위원(이하 “위원” 이라고 한다)”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 하여야” 를 “해촉하여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유가 발생한 경우” 를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참여하지 아니한” 을 “불참한” 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4조” 를 “제16조” 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5조) 중 “업무 담당과장이” 를 “부서 과장이” 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19조(중전의 제17조) 중 “영 제49조” 를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 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8조)제3항 중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영 제57조제2항” 을 “영 제57조” 로 한다.

제6장(제2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및 특별회계

제22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의 자문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4조 · 제5조 (생 략)

제6조(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자문의견 -----

-----.

③ (현행과 같음)

제3장 인 · 허가 의제 협의회

제5조 · 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

제7조(회의의 개최 통보) -----

협의회 개최 -----
-----.

제7조·제8조 (생략)

<신설>

<신설>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제8조·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4장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10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42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위촉 해제) ① ----- 위원-----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촉하여야 -----
---.

1. 2. (현행과 같음)

3. -----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4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0조 ~ 제14조 (생략)

제1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지역개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7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영 제49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 경우

4. -----
----- 불참한 -----

5. 제16조-----

제12조 ~ 제16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7조(간사 및 서기) -----

----- 부서 과장이-----
-----.

제18조(수당 등) -----

----- <단서 삭제>

제5장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1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역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제18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② (생략)

③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지원센터의장은 지역개발사업구역 입주기업으로부터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업무에 대한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검토·처리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청기업에 즉시 알려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

제20조(자문단 구성 및 전문위원 위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

제21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

----- 영 제5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지역활성화지역 지원 및 특별회계

제22조(우선지원 대상) 도지사는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활성화 지역의 발전을

제20조 (생 략)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
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4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2. 거점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국가의 특별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려면 공람 또는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해

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절차 및 방법 또는 공청회의 시기, 개최 절차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중복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구역과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지역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및 인·허가등 의제 협의 등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6. 제57조에 따른 지역개발 관련 정보의 제공과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통합정보망 관리에 관한 사항

7. 제66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투자선도지구의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건축·세무·민원 등 인가·허가 업무

9.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림업·해양업·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4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16조(공청회)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역개발사업계획의 개요

③ 공청회가 지정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

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다른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청회는 지정권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두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은 해당 시·도의 지역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구성원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세무, 환경 등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방환경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 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지역개발, 도시계획, 산업단지, 건축, 환경 분야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허가 지원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는 지원받으려는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토하여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는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하면 지원신청을 한 기업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허가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① 법 제70조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법 제7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시행 2011. 6. 10.] [충청북도조례 제3368호, 2011. 6. 10., 일부개정]

제3조(수당)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전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1호

○ 사 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내용과 조문 구성 및 문장 등을 수정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